

# 한국체육대학교 시설공간 관리 규정

제정 2012. 4.18. 규칙 제597호  
개정 2012.10.26. 규칙 제608호  
개정 2015. 8.28. 규칙 제686호  
개정 2020. 4. 2. 규정 제820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체육대학교 시설공간의 효율적 관리 및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한국체육대학교의 모든 시설공간(이하 “공간”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자” 라 함은 공간의 효율적 관리 및 사용을 위하여 총장으로부터 각 단과 대학 및 부속기관의 관리를 위임받은 단과대학의 장 및 부속기관의 장 등을 말한다.
2. “사용자” 라 함은 공간을 실제로 사용하는 교수·단과대학·학과·학부·부속기관 등을 말한다.
3. “기본사용공간면적” (이하 “기본공간”이라 한다)이라 함은 사용자가 공간사용료 부담 없이 사용이 인정되는 최소 기준면적을 말한다.
4. “초과사용공간면적” (이하 “초과공간”이라 한다)이라 함은 사용자가 제3호의 기본사용공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면적을 말한다.
5. “공용공간”이라 함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서 강의실, 수업용 실험실습실, 훈련용 체육관 등을 말한다.

**제4조(공간 관리 및 사용 원칙)** ① 한국체육대학교가 관할하는 모든 공간의 관리 권한은 총장에게 있다.

- ② 총장은 공간의 효율적 관리 및 사용을 위하여 단과대학의 장이나 부속기관의 장 등에게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여 공간을 관리 및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③ 관리자는 총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공간을 그 목적과 용도에 맞게 관리하고 건물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지 않는 등 관리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④ 공간은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을 개방할 수 있다.
- ⑤ 특정 연구과제 수행을 위하여 배정한 공간은 연구 종료 시 반납하여야 한다.
- ⑥ 초과공간은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반납하지 않을 경우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⑦ 공용공간은 총장이 직접 관리하며, 초과사용료의 징수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의2(공간 임의변경 금지)** 사용자는 관리자의 승인 없이 공간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임의로 변경한 경우 지체 없이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0.4.2.]

**제5조(공간 배정기준)** ① 총장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공간을 제9조의 공간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사용자에게 기본공간으로 배정하되, 칸(span)을 기준으로 한다. ② 기본공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자에게 기본공간을 배정하되, 건물구조·사용효율성,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총장이 공간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 교수연구실: 1칸(span)
2. 연구용 실험실습공간: 1칸(span) 내지 6칸(span)의 범위내에서 공간조정위원회에서 따로 정하는 면적
3. 기타공간: 공간조정위원회에서 따로 정하는 면적

**제6조(초과사용료)** ① 사용자가 기본공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초과사용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1. 교수연구실: 초과공간 1칸당 연간 100만원
  2. 연구용 실험실습공간: 초과공간 1칸당 연간 200만원
  3. 기타공간: 초과공간 1칸당 연간 1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 ② 초과사용료는 교육 및 연구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설·설비의 확충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사용한다.

**제7조(초과사용료 납부)** 초과사용료는 초과공간의 사용자에게 배정되는 대학회계 예산에서 차감 징수하되, 사용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한다.

**제8조(불이행자 조치)** ① 총장은 제4조의2에 따라 공간을 자체 없이 원상복구하지 아니한 경우 공간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자로부터 즉시 공간을 회수하는 등 행·재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신설 2020.4.2.>

② 총장은 제7조에 따른 초과사용료를 체납하거나 반납하여야 할 공간을 반납하지 않는 사용자에 대하여는 공간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재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제9조(공간조정위원회)** ① 공간 관리 및 사용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간 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기획처장, 대학원장, 사회체육대학원장, 스포츠과학대학장, 생활체육대학장, 교학처장, 사무국장, 훈련처장, 체육과학연구소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명직위원은 총장이 임명하고 위원장은 기획처장이 된다.

③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기획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간사용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기본공간면적 기준의 산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공간 관리 및 사용 권한의 회수 또는 제한에 관한 사항
4. 사용료 체납 등에 대한 행·재정적 제재에 관한 사항
5. 초과사용료 부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간 관리 및 사용 관련 사항

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공간관리 부서)** ① 교수연구실 및 교육관련 공간은 교학처에서, 훈련실습공간은 훈련처에서, 연구용 실험실습공간은 산학협력단 또는 체육과학연구소에서, 그 밖에 공간은 기획처에서 관리를 담당한다.

② 초과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는 총무과의 협조를 받아 기획처에서 담당한다.

**제11조(기타)** 이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간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 **부 칙(제597호, 2012. 4. 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한국체육대학교 기획위원회 규정 제3조제4호 중 “및 공간”을 삭제한다.

### **부 칙(제608호, 2012. 10. 2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제686호, 2015. 8. 2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제820호, 2020. 4. 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